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 고 대 상 자 및 처분내역

행 정 처 분 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당사자	성 명	연○우(1978.10.29.)	자격번호	2-343***호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대상자는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취소일자 : 2026.8.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주의사항	자격취소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4항 참고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끝.